

경운대학교 현장실습지원센터운영규정

제1장 총 칙

제1조(목적) 이 규정은 경운대학교 학생들의 현장실습에 필요한 정보 및 프로그램을 제공하고, 현장실습기회를 발굴·확대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명칭 및 위치) 본 센터는 경운대학교 현장실습지원센터(이하 “센터”라 한다)라 칭하고 경운대학교(이하 “본 대학교”라 한다) 내에 둔다.

제3조(기능) 센터는 제2조의 목적을 실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.

1. 현장실습기회의 발굴·확대 및 제공
2. 현장실습정보 및 순회지도관련 업무
3. 현장실습 대비 사전교육 및 프로그램 개설
4. 각종 현장실습지원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한 행정 지원 및 조정업무
5. 기타 현장실습과 관련되는 업무

제2장 조직 및 업무

제4조(기구) ① 센터는 경운대학교(이하 “본 대학교”라 한다) 내에 둔다.

② 센터에는 현장실습 1팀과 현장실습 2팀을 둔다.

제5조(구성) 센터는 센터(소)장, 전문위원을 두며, 필요에 따라 조교를 둘 수 있다.

- ① 센터(소)장은 경운대학교 교원 중에서 총장이 임명한다. 센터(소)장은 센터의 업무를 총괄하며 임기는 1년으로 하되, 중임할 수 있다.
- ② 전문위원은 현장실습을 위한 업체발굴과 교육·훈련을 지도한다. 전문위원은 산학협력 중점교수나 경운대학교 교원 중에서 센터(소)장의 추천에 의하여 총장이 임명한다.
- ③ 센터의 업무를 보조하며, 총장의 승인을 얻어 조교를 둘 수 있다.

제3장 운영위원회

제6조(운영위원회) ① 센터의 연구업무와 예산 및 결산 등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 의결하기 위하여 운영위원회를 둘 수 있다.

- ② 운영위원은 센터(소)장의 제청으로 총장이 임명하는 학과별 1~3인의 교원으로 구성한다.
- ③ 위원장은 센터(소)장이 되며, 위원회를 대표하고 회무를 총괄한다.
- ④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, 중임할 수 있다.
- ⑤ 운영위원회는 정기운영위원회와 임시운영위원회로 하며,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최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 다만,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위원장이 결정권을 갖는다.
- ⑥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며, 현장실습지원센터의 직원 중 1인을 위원장이 임명한다.

제7조(운영위원회 기능) 운영위원회는 다음과 같은 사항을 심의 의결한다.

1. 센터운영에 관한 장·단기 기본계획 수립
2. 규정(안) 및 운영세칙(안)의 심의 작성
3. 시설 및 장비의 활용에 관한 세부사항 심의
4. 예·결산 심의
5. 기타 필요한 사업제

4장 재 정

제8조(재정) 센터의 재정은 정부지원금, 교비와 외부보조금, 기부금 및 기타수입으로 한다.

제9조(회계연도) 본 센터의 회계연도는 본 대학교 회계연도에 따른다.

부 칙

1. (시행일) 이 규정은 2012년 6월 5일부터 시행한다.